

Vol. 07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6. 02. 15.

■ 농정이슈

종자주권 관련 언론동향 등

■ 정책브리핑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 연구지원

1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대외협력실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종자주권 관련 언론동향

- [파이낸셜뉴스, '종자주권 확보한 중국, 우린 어떤가' 사설, 2.4.] 중국화공이 신젠타를 430억 불에 인수, 세계 종자시장 주도권 경쟁 치열하나 **한국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음**
 -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종자기업 선두주자들이 줄줄이 외국기업에 팔림, 현재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67%는 외국에 로열티**를 내고 씨앗을 사들여 재배한 것
 - 종자 관련 로열티 지급액만 '11~'20년 **10년간 8,000억 원 추산**
 -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인력 양성 등 연구 인프라부터 갖추는 것이 필요
- [농식품부, 파이낸셜뉴스 사설 관련 해명자료 배포, 2.5.]
 - (**‘농산물의 67%는 외국 로열티 내고 사온 것’ 관련**) 벼, 보리, 콩 등의 식량 종자는 100% 자급, 채소종자 중 토마토, 파프리카, 양파 등 일부 품목만 수입
 - 외환 위기 당시 외국기업의 국내 종자회사 인수로 외국 기업 점유율(65%) 늘어났으나, 정부의 종자산업육성 정책 등으로 **‘14년에는 국내 업체 점유율 89%까지 확대**
 - ※ 채소종자시장 국내업체 점유율: ('97) 35% → ('10) 67 → ('14) 89
 - (**로열티 10년간 8,000억 원 관련**) 8,000억 원은 10년간 로열티 지불추정액 2,905억 원과 예상 종자수입액 5,056억 원 합쳐진 금액으로 맞지 않음
 - 로열티 지불액은 '12년 176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농촌진흥청의 품종 개발 등 **로열티 대응연구사업**의 성과로 **'15년에는 121억 원까지 줄어듬**
 - **'17년까지 110억 원 수준**으로 절감 목표
 - ※ 로열티 지불액: ('12) 176억원 → ('13) 162 → ('14) 136 → ('15) 121 → ('17년 목표) 110
 - (**종자주권 정책 관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13~‘17)**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자산업 육성 중, 예산지원도 매년 확대
 - ※ ('13) 1,973억 원 → ('16) 2,207
 - 품종 국산화율 향상을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12~‘21, 4,911억 원), 로열티 대응연구사업(‘06~‘15, 690억 원) 등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

㉔ 농정이슈

※ 국내 종자 개발 역량을 높여 종자 수출을 확대(현재 4천만 불 → '21년 2억 불) 하고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수출전략 품목 10개, 수입대체 전략품목 10개 등 총 20개 품목에 대한 품종개발 추진(농식품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 공동)

자료: 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2016.02.05.) / 이코노믹리뷰(2016.02.07.)

참고: 농식품부 해명자료_「종자주권 확보한 중국...우린 어떤가 (파이낸셜뉴스 사설, 2.5.) 관련 해명」(2016.02.05.)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관련 언론 동향

- [김승남 의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필요 주장, 2.4.] 농업에 대해서는 산업적 접근이 아니라 식량주권 개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는 FTA 등 시장개방으로부터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마지노선
- [연합뉴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관련 보도, 2.9.] 추곡수매제도 폐지 이후 농업 현장서 찬반 논쟁
 - 매년 기초농산물 가격과 수급 불안정 반복...정부가 직접 사들여 수급과 가격 관리 필요
 - 수매를 믿고 오히려 과잉생산을 불러 농업경쟁력 약화시킬 수도
 - 지금까지 유지해 온 농업정책을 완전 개편...정부 의지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자료: 광남일보광주매일신문노컷뉴스무등일보이뉴스투데이전남일보(2016.02.04.) / 연합뉴스(2016.02.09.)

□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신규 추진

- [농식품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신규 추진, 2.5.] 영농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여 영농창업 망설이는 청년층 대상
 - ※ 귀농 애로요인(KREI, 복수답변): 여유자금 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 (지원대상) 만19~39세의 신규 또는 영농경력 3년 미만자 300명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배정인원	32	30	25	33	32	51	51	40	6	300

㉔ 농정이슈

- (지원과정) △**창업준비과정**…본인 설계에 따라 영농창업인턴십·연수프로그램 이수, △**창업과정**…농업경영체 등록 및 이행실적 제출
 - (지원내용) 창업안정자금 **월 80만원 지급**, 최대 2년간 지원
 -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4년) 기간 동안 영농종사의 의무 이행, 지원기간 동안 연간 일정시간(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 의무교육 이수
 - 최근 유래없는 청년취업난으로 도시는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한 반면, 농촌에는 고령화로 청년인력이 부족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 자료: MINCOSSSES 경기일보·동양일보·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투데이·전북일보·파인앤셀뉴스·헤럴드경제(2016.02.10.) / 국제뉴스(2016.02.11.)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2016년 유능한 청년창업농을 뽑습니다」(2016.02.10.)

㉕ 오래된 묵은 쌀 2월부터 사료용 공급

- [농식품부, 묵은 쌀 사료용 판매 계획 발표, 2.5.]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쌀 99천 톤(현미 기준) 사료용 공급
 - 사료관련 단체·농진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통해 공급가격, 물량 배정, 사후관리방안 등 논의
 - (대상 곡종 및 물량) 국내산 '12년산 약 99천 톤(현미 기준)
 - (공급가격 및 공급기간) 200원/kg, '16.2월~12월
 - (공급대상)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사료 제조업체
 - (물량 배정) 사료시장 점유율, 향후 사료용 쌀 수요 확대 등 고려하여 사료관련 단체별(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공급물량 배정
 - (사후관리) △사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료용 쌀 사후관리 기준**」 마련, △농관원, 지자체, 사료관련 단체 등이 주기적 점검 실시 등 철저 관리
- 자료: 국제뉴스·한국농업신문(2016.02.09.) / 광주일보(2016.02.11.)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오래된 묵은 쌀 2월부터 사료용 공급 추진」(2016.02.05.)

정책브리핑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02.10.)

□ 주요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및 의결, 2.11.]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신설) 음식점에서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 판매 가능
 - ※ (기존) 탁·약주 5kl 이상, 청주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 취득 가능 → (개정) 1kl 이상 5kl 미만 저장용기 보유한 경우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취득 가능
 - (귀농주택 요건 조정)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 조정
 - ※ 귀농주택 : 연고지에 소재, 고가주택(9억 원 이상)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 1천㎡ 이상 농지 소유, 세대 전원이 거주할 것
 - ※※ 기존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에서 '연고지' 요건 삭제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 확대
 - ※ (기존) 연간 2천만 원 → (개정) 연간 3천만 원
 - (스마트팜 기술 비용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비* 30% 법인세에서 공제
 - ※ 중소기업의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 중견기업은 20%
 - ※※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약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 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

▣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개정 내용
농업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연간 2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귀농주택 적용요건 완화	· 귀농주택 적용요건 ‘연고지’ 삭제 · 종전주택 처분기한(5년) 신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기자재 품목 확대	· 52종 → 56종(4종 추가*) * 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농업 법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 추가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추가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신설 등	·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 신설 및 판매행위* 허용 *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넣어 외부로 판매 가능 · 일반적 시설기준보다 완화된 시설기준* 적용 * 제조장 저장용기: (일반) 탁약주 5kl 이상, 청주 12.2kl 이상 → (소규모) 1kl 이상 5kl 미만 · 소규모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 신설 * (일반) 출고시 가격 → (신설)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종자 및 묘목생산업 포함	· 영농상속공제 적용기업 제외 → 종자 및 묘목생산업 포함 * 단,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50%미만인 경우만 허용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 음식점업 공제한도* 확대 기한 연장 (*16.12.31까지) * 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 1억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 50 → 55%, (2억초과) 40 → 45% 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40 → 35% · 임산물 매입시에도 매입처별계산서 집계표 없이 공제신고서만 제출 허용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스마트팜 기술 추가	·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 (인건비, 견본품 및 부품 구입비 등)의 20%(중소기업 30%)
기 타	농특세 비과세 대상 확대	· 중소기업 핵심인력 소득세 감면, 평창올림픽 관련 외국법인 소득세·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연구지원 1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FAO(2016.02.11.)

주요내용

- [’16년 1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150.4포인트… 전월 대비 1.9%↓
 - 전년 대비 15.9%↓…’09년 4월 이후 최저치
 - 풍부한 공급량 및 세계적 수요 부진으로 모든 품목의 가격 하락
 - 설탕·유제품 가격 가장 큰 폭 하락
 - (곡물) 149.1포인트…전월 대비 1.7%↓, 풍부한 공급량, 수출시장 경쟁 심화, 미 달러화 강세에 기인
 - (유지류) 139.1포인트…전월 대비 1.7%↓, 대두유 가격 하락에 기인
 - (설탕) 199.4포인트…전월 대비 4.1%↓, 세계 최대 설탕 생산·수출국인 브라질의 양호한 생산 전망
 - (육류) 148.3포인트…전월 대비 1.1%↓, 오세아니아 지역의 최대 생산시즌 시작으로 인해 양고기 가격 큰 폭 하락
 - (유제품) 145.1포인트…전월 대비 2.9%↓, EU의 우유 생산량 증가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풍부한 가용량 전망
- 2015/16년도 세계 곡물 수급 전망
 - (생산량) 2,530.9백만 톤…전년 대비 1.2%↓
 - ※ 생산량 전망치(전년 대비): 밀0.5%(3.9백만 톤)↑ / 잡곡2.4%(31.5), 쌀0.5%(2.5) 감소↓
 - (소비량) 2,526.6백만 톤…전년 대비 0.8%↑
 - ※ 소비량 전망치(전년 대비): 밀2.0%(14.4백만 톤), 쌀1.1%(5.7)↑ / 잡곡은 전년 동일
 - (기말재고량) 642.4백만 톤…0.4%↑
 - ※ 기말재고량 전망치(전년 대비): 밀2.3%(4.8백만 톤), 잡곡1.2%(3.2)↑ / 쌀3.2%(5.5)↓

FAO 식량가격지수

(단위: 포인트)

연도	식량가격지수	육류	유제품	곡물	유지류	설탕	
2007	161.4	130.8	219.1	163.4	172.0	143.0	
2008	201.4	160.7	223.1	232.1	227.1	181.6	
2009	160.3	141.3	148.6	170.2	152.8	257.3	
2010	188.0	158.3	206.6	179.2	197.4	302.0	
2011	229.9	183.3	229.5	240.9	254.5	368.9	
2012	213.3	182.0	193.6	236.1	223.9	305.7	
2013	209.8	184.1	242.7	219.3	193.0	251.0	
2014	1월	203.2	182.2	267.7	191.4	188.6	221.7
	2월	208.6	181.8	275.4	198.6	197.8	235.4
	3월	213.8	185.5	268.5	208.9	204.8	254.0
	4월	211.5	190.4	251.5	209.2	199.0	249.9
	5월	210.4	194.6	238.9	207.0	195.3	259.3
	6월	208.9	202.8	236.5	196.1	188.8	258.0
	7월	204.3	205.9	226.1	185.2	181.1	259.1
	8월	198.3	212.0	200.8	182.5	166.6	244.3
	9월	192.7	211.0	187.8	178.2	162.0	228.1
	10월	192.7	210.2	184.3	178.3	163.7	237.6
	11월	191.3	206.4	178.1	183.2	164.9	229.7
	12월	185.8	196.4	174.0	183.9	160.7	217.5
	(평균)	201.8	198.3	224.1	191.9	181.1	241.2
2015	1월	178.9	183.5	173.8	177.4	156.0	217.7
	2월	175.8	176.9	181.8	171.7	156.6	207.1
	3월	171.5	170.4	184.9	169.8	151.7	187.9
	4월	168.4	170.8	172.4	167.2	150.2	185.5
	5월	167.2	172.6	167.5	160.8	154.1	189.3
	6월	164.9	169.5	160.5	163.2	156.2	176.8
	7월	164.2	172.7	149.1	166.5	147.6	181.2
	8월	155.0	170.8	135.5	155.1	134.9	163.2
	9월	155.3	167.6	142.3	154.8	134.2	168.4
	10월	158.2	158.0	155.6	157.3	142.6	197.4
	11월	155.2	154.6	151.1	153.6	138.2	206.5
	12월	153.4	150.0	149.5	151.6	141.5	207.8
	(평균)	164.0	168.1	160.3	162.4	147.0	190.7
2016	1월	150.4	148.3	145.1	149.1	139.1	199.4
	(평균)	150.4	148.3	145.1	149.1	139.1	199.4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대외협력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